

03

유럽연합과 일본의 지역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원섭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머리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역의 발전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창의와 열정의 정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욕이 전국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 교통, 정보화 시대의 전개로 국민의 생활공간이 더욱 광역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 지역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서로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지닌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지역간 협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관련 지자체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원을 절약하고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유형, 무형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간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지역협력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인 Interreg III, 일본의 시정총간 협력, 미국의 지자체간 협력, 프랑스의 꼬민간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인 Interreg III과 일본의 시정총간 협력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이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위한 시사점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Interreg III)

1) EU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목적과 접근방법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럽의 지역간에 대규모의 정보 및 노하우의 교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유럽연합의 지역발전 및 결속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정책수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비연속적인 지역이 접촉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경험의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유럽연합 및 다른 나라들이 균형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여러 가지 구조기금 프로그램(Objective 1, 2, Interreg 및 Urban Community Initiative, 도시개발, 지역혁신 프로그램 등)과 국가별 정책 시행에서 축적된 경험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지역간에 공유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2000~2006년 기간을 대상으로 지역협력프로그램(INTERREG III)을 시행중에 있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은 대상지역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경지역 협력(INTERREG III A), 국가간 협력(INTERREG III B),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은 가장 최근인 2000~2006년 계획기간 중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세가지 유형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목적은 국경지역, 국제간,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EU의 경제·사회적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협력프로그램은 구조기금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며, 재원은 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지원하는데 2000~2006년 기간 중 48.75억 유로를 계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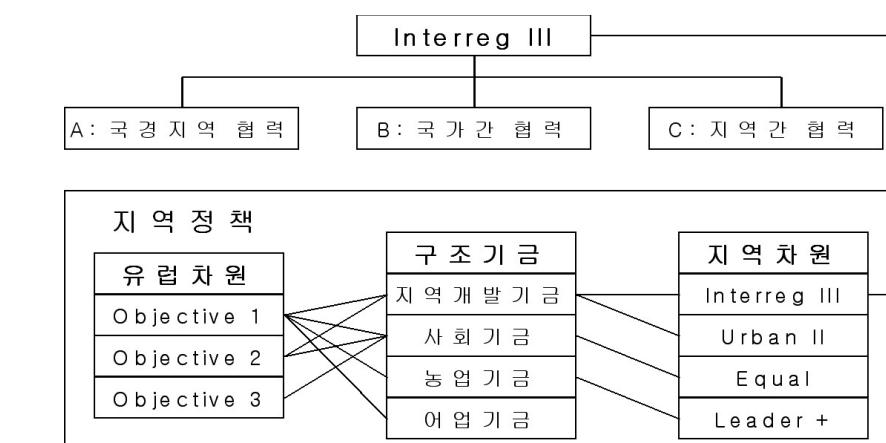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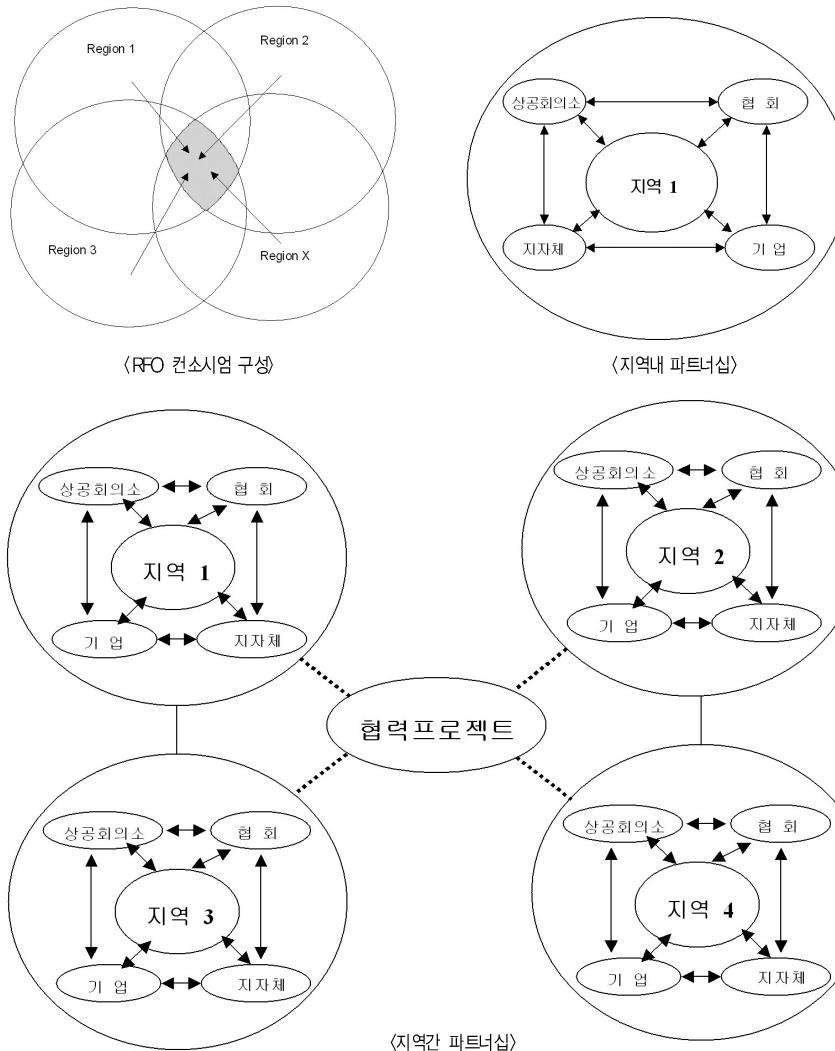


그림1. EU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과 지역정책의 관계

03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지역간에 경험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다른 정책수단과 프로젝트 접근방식으로부터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지역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또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도시, 농촌, 국경, 쇠퇴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유사한 문제 및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 정책수단 및 프로젝트개발에 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자료: Thomas Wobben, 2002.

그림 3.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십 구성

2) 지역간 협력사업의 주제 및 운용형태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는 5가지의 협력주제와 3가지의 협력유형 중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협력의 주제는 구조기금의 활동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가 있다.

(1) 구조기금 관련주제(topic a)

구조기금 프로그램(목표지역 1과 2)¹⁾이 지원하는 활동유형과 관련한 지역간 협력이다. 이는 구조기금의 94%가 목표지역(Objective) 프로그램에 지출되고 있으나, 단위 지역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정보 및 경험 교환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어 목표지역 1, 2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주체들간의 직접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력파트너들이 목표지역 1, 2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목표지역 프로그램의 활동에 관심이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다.

(2) 지역협력 관련주제(topic b)

지역협력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공공기관을 연계하는 지역간 협력사업으로서 국경지역(cross-border) 및 다국간(transnational) 활동의 경험 공유 및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거나 지역협력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국경 및 국가협력 프로그램의 절차 및 운용구조 검증을 위한 사무국간의 네트워킹과 같은 사업이 해당된다. 그리고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경험의 교환을 통한 정책개선이므로 이 주제는 국경지역 및 다국간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접근방식 또는 정책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다.

(3) 도시개발 관련주제(topic c)

도시개발은 유럽의 핵심 지역정책 분야의 하나로서 도시개발사업 및 목표지역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활동과 함께 도시개발 문제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협력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도시개발 주제는 중소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에 개방되나, 구조기금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지역을 우대한다.

(4) 지역혁신 관련주제(topic d)

1) 목표지역 1(Objective 1)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교통, 용수공급, 에너지, 폐기물처리, 통신, 보건, 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고, 목표지역 2(Objective 2)는 구조전환 지역의 매력과 고용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이다.

03

2000~2006년 계획기간 중 설정된 지역혁신 활동의 중점분야는 지식 및 기술혁신 기반의 지역 경제, 정보화사회 및 지역발전(e-EuropeRegio), 지역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3가지이다. 지역혁신 프로그램에 포함된 추진전략은 프로젝트 집행결과를 목표지역 1, 2 프로그램으로 이전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이 된다. 이 주제에서는 개별 혁신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대해 경험의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하거나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둔다.

(5) 기타 협력주제(topic e)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구조기금 활동과 관련한 주제 외에도 지역간 협력에 적합한 많은 다른 주제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해양 및 연안협력, 공간계획문제, 도서 및 최원격지 문제에 관한 협력, 자연 및 인공재해의 해결방안 협력, 인구회복지 또는 산간지역 등 조건불리에 의한 경제 효과 저감에 관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표1. 지역협력 프로그램의 협력 주제 및 유형

주제 및 유형		대상분야
협력주제	a	목표지역(Objective) 1, 2
	b	지역 협력(Interreg) 프로그램 관련 지역간 협력
	c	도시개발 관련 지역간 협력
	d	혁신활동 관련 지역간 협력
	e	기타 적절한 주제
협력유형	a	지역단위 협력(RFO Regional Framework Operation)
	b	개별 협력프로젝트
	c	네트워크 협력

한편, 지역간 협력사업이 운용되는 형태는 지역단위협력, 개별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협력 등 3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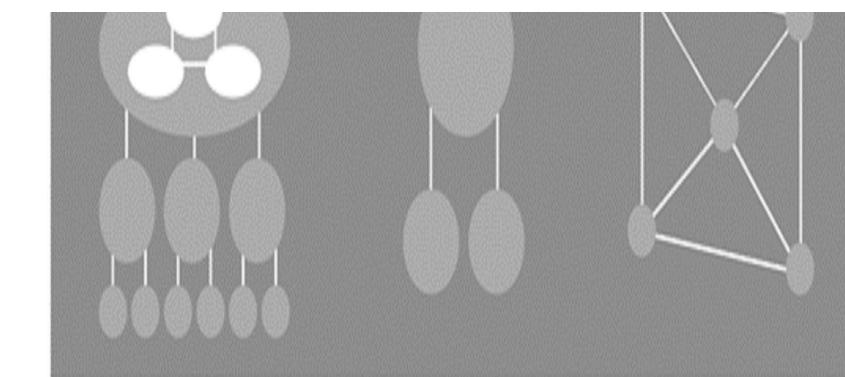
(1) 지역단위 협력(Type a): RFO(Regional Framework Operations)

지역단위 협력은 지역간에 지역개발 방법 및 프로젝트 기반 활동에 관한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유형이다. 지역협력기구(RFO)는 지역그룹간에 방법론 및 프로젝트 기반 활동의 교환을 위해 참여 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류 및 학습과정을 개발한다. 또한 지역협력기구는 참여지역을 포함하는 지역간 협력전략에 기반을 두면서 일종의 미니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협력기구는 최소 3개국(2개국은 회원국)의 지역으로 구성되며, 선도기관이 전체를 대표하여

선도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프로그램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지역협력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지역의 각종 기관 및 조직으로 구성되는 지역단위 파트너십에 의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협력기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참여지역을 포함하는 지역간 협력전략, 활동의 목표 및 기대결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재한된 수의 주제에 중점, RFO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유형의 설명, 파트너 및 기타 참여기관의 수, 파트너 간의 재원분담(선도기관은 40% 이상 분담 금지), 기준정책금리(intervention rates), 내부적인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평가기준 등이 그것이다.

개별 지역협력기구(RFO)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의 출연금은 50만~500만 유로이며, 지구별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예산의 50~80%를 RFO에 배정한다. 지역협력기구(RFO)는 지역간 협력의 5가지 주제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자료: INTERREG IIC North Joint Technical Secretariat, 2004

그림 3. 지역간 협력의 3가지 운영형태

(2) 개별적인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Type b)

개별협력 프로젝트는 지역간 협력의 방법론과 프로젝트 기반 활동의 경험을 교류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순한 지식의 전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여러 부분의 실현에 관한 진정한 협력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개별 협력프로젝트 유형의 구체적인 효과는 특정 지역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 이식함으로써 수혜지역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개별협력 프로젝트는 최소 3개국(이 중 2개국은 회원국)으로부터의 파트너로 구성되는데, 선도기관의 재원분담은 40%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은 20만~100만 유로이다. 지구별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산의 10~30%를 개별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있다. 개별 지역간 협력 프로젝트 역시 지역간 협력의 5가지 주제 전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03

(3) 네트워크형 지역간 협력(Type C)

네트워크형 협력은 유럽연합 내외부 지역간에 프로젝트 시행방법 및 개발에 관한 연계를 추구하는 유형이다. 네트워크형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세미나, 회의,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학습여행, 직원교류 등을 통한 경험의 교류와 전문지식 전파와 관련한 비용이다. 지구별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예산의 10~20%를 네트워크형 협력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다.

하나의 네트워크는 최소 5개국으로부터의 파트너(이 중 3개국은 회원국)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별 네트워크형 협력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은 20만~100만 유로이며 모든 지원은 네트워크 선도파트너에게 지급되고 관리된다. 네트워크형 협력 프로젝트는 5가지 지역간 협력 주제 중에서 지역혁신 관련 협력을 제외한 4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역협력기구(RFO), 개별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트너는 지역기구 혹은 이와 동등한 지역기관이어야 하며, 행정 및 공적자금의 관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기관, 도시기관(특히 도시개발 분야), 공적자금 관리능력이 있는 지역개발기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파트너는 공적자금의 관리능력에 관해 공공기관이 보증을 제공할 경우 RFO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구별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내에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의 75% 이상을 최소한 하나의 파트너가 외부지역에서 참여하는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지구내에 위치한 도서 및 최원격지의 협력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FO, 개별 지역간 협력프로젝트, 네트워크형 협력은 하나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자금을 지원받는다.

표2. INTERREG III C 운용형태별 신청기준

구분	RFO ⁹	개별 프로젝트	네트워킹
최소 파트너 수	3개국 이상의 국가 소속으로 이 중 2개는 회원국 지역	3개국 이상의 국가 소속으로 이 중 2개는 회원국 지역	5개국 이상의 국가 소속으로 이 중 3개는 회원국 지역
파트너/ 참여 유형	- 지역당국 또는 대등한 지역 단체 - 수준: 공공기관 또는 대등한 참여자, 공공기관 보증 하의 민간참여자	공공기관 또는 대등한 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등한 단체
협력의 정도	양여	양여	분배, 교환
ERDF 출연액 (전체 비중)	50만~5백만 유로 (50~80%)	20만~1백만 유로 (10~30%)	20만~1백만 유로 (10~20%)

주 : 1) RFO: Regional Framework Operations

자료 : International Working Party-West Zone, 2001, ERDF 2000-2006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 INTERREG III C West Zone.

3)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

2003년 1월 10일에 마감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1차 제안서 접수는 총 159건에 달하였다. 지구별로는 북부 21건, 동부 27건, 남부 93건, 서부 18건이 분포하며, 국가별 선도기관 분포는 스페인 50개, 이태리 33개, 독일 및 그리스 각각 15개, 스웨덴 11개 등의 순서이다. 전체 참여기관은 52개국 1,401개 기관으로서, EU회원국별로는 이태리 234개, 스페인 232개, 그리스 123개, 독일 111개, 프랑스 83개, 포르투갈 82개, 영국 76개 등의 순서를 보였다. 비회원국의 경우 폴란드 36개, 헝가리 26개, 불가리아 22개, 노르웨이 19개, 리투아니아 16개, 체코공화국과 슬로베니아 각각 15개 등이 참여하였다.

제출된 제안서를 협력의 주제 및 유형별로 구분하면 먼저 주제별로는 낙후지역인 목표지역(Objective 1, 2)이 28개, 지역협력(Interreg) 23개, 혁신활동 12개, 국경지역 5개, 도시개발 4개 등의 분포를 보이며, 협력유형별로는 개별프로젝트가 95개로 가장 많으며, 네트워크형이 42개, 지역단위협력형이 22개이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다.

■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및 관광진흥사업(TouriSME: Strengthening of SME and tourism for sustainable and balanced development)

TouriSME의 사업목표는 목표지역 1, 2의 중소기업 진흥과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발전을 위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정책수단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목표는 중소기업 정책의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다 나은 장기적인 지역협력 여건을 개선시키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의 개발, 관광부문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로 설정하고 있다.

TouriSME의 협력유형은 RFO 사업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벤치마킹, 연구, 시범사업, 교육훈련, 주제별 출장, 제품 디자인 및 개발, 마케팅, 경영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항구도시 재생사업(NEW EPOC: reNEWing Economic prosperity for POrt Cities)

NEW EPOC의 사업목표는 참가도시와 이들 도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및 도시개발 과제, 항구도시의 문화유산 및 전통공예기술 보전, 경제·기술·도시변화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며, 항구도시의 경제부흥과 관련한 정보, 전문기술, 지침 및 네트워크 수단을 공공정책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NEW EPOC의 사업 유형은 개별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영국 등 7개국에서 1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조직인 해양도시네트워크(Maritime Cities Network)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

03

며, 주요활동은 도시부흥에 필요한 분야별 모범사례 및 벤치마킹 활동의 발굴과 DB 구축, 지식 전수, 핵심주체간(정치대표기구, 상공회의소, 도시마케팅기구, 수공업협회 등)의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회의, 지침·권고·협동전략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공항지역의 경제개발사업(DEAR: Developing the Economies of Airport Regions)

DEAR의 사업목표는 유럽연합의 주변지역 또는 과거의 국경지역으로서 군용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하였거나 현재 전환 중에 있으며 인근에 비즈니스 파크를 보유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항이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DEAR의 사업유형은 개별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며, 독일, 영국, 폴란드, 그리스 등 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요활동은 공공기관 및 지역개발 담당자,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공항 및 비즈니스파크 관리, 중소기업 육성,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공동구매 활동, 새로운 훈련수단 개발, 미래발전 연구 등과 관련한 지식의 획득 및 교류이다.

■ 해안지역 개발사업(AQUAREG)

AQUAREG의 사업목표는 유럽연합 주변부 해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제공 및 전략수립이며, 해안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해양산업의 혁신 및 비즈니스 개발, 해양부문의 고용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AQUAREG의 사업유형은 RFO 사업으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스페인, 아일랜드의 3개 지역이 참여하며, 이들 지역은 지역의 자원기반 및 산업전통에 반영된 우수한 해양연구 환경을 보유하는 특징을 지닌다. AQUAREG에서는 Aqualink(수산업과 연구의 연계), AquaEd(교육훈련), AquaPlan(해안지역 계획 및 관리)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산양식자, 어업인, 과학자의 경험 및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유럽탄전지역 재생사업(RECORE: Regenerating Europe's Coalfield Regions)

RECORE의 사업목표는 EURACOM(유럽의 탄전지역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기능을 로비 중심에서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협력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탄전지역의 대규모 및 장기적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보다 나은 재생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범사업의 분석을 통한 재생정책 개선, 유럽연합 및 기타 재정지원의 증대,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및 재생정책의 사용방법에 관한 신속한 학습, 참여주체들간의 경험 전파, 유럽 탄전지역간의 네트워킹 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RECORE는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체코, 독일,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우크라이나의 8개 목표지역 1이 참여하며, 이를 지역은 유럽의 거의 모든 탄전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RECORE에서 추진하는 주요활동은 첫째, 6개 핵심주제(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환경치유, 관광유산 및 레저, 훈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모범적인 지역재생기법 및 정책의 검토를 위한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하며, 각 세미나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 및 재원의 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의 균등 등 3가지의 주제를 검토한다. 둘째, 세미나에서 발견된 사실 및 교훈의 전파를 위해 성과를 종합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생산, 출판하여 탄전지역 및 참여주체에 널리 배포하는 활동으로 여기에는 탄광지역 시범재생사업 매뉴얼, 웹사이트 개발, 상이한 정책 및 재정지원간의 시너지효과, 탄전지역 지자체간의 네트워킹 개선 등이 포함된다.

■ 전략적 정보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STRATINC: Strategic Intelligence and Innovative Clusters)

STRATINC의 사업목표는 유럽 수준에서 정보숙련과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지역의 산업클러스터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STRATINC의 사업유형은 개별협력사업으로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의 6개 지역이 참여하며, 목재(Lorraine), ICT(Central Macedonia), 건강바이오(Oslo), 농업식품(Murcia/ Tenerife), 신소재(Nord-Rhein-Westphalen) 등 5개의 지역산업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한다.

STRATINC의 주요활동은 정보숙련에 있어 산업클러스터 혹은 개별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식, 다양한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정보수요의 식별, 기존 경제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석방법 및 기법 벤치마킹,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에 관한 안내서 제작, 응용툴의 테스트·실행·사용에 관한 투자, 중소기업 및 클러스터간 협력을 위한 지역간 교류 및 워크샵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일본의 시·정·총간 협력사례

1) 지역간 협력사업의 추진배경

일본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수준 높은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함에 따라, 지방 공공시설이나 서비스 공급에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게

03

되었다. 또한 국민의 생활 행동권이 광역화되면서 생활권 단위로 광역적으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시정촌이 세력권을 다투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광역적인 차원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존 사회간접자본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공공투자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복합화, 사업주체의 연계, 기능의 네트워크를 추진하였다. 공공시설의 복합화는 각 지역에 분산 입지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을 물리적이나 기능적으로 일체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주체의 연계는 관·민, 관·관 연계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화란 정보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이용기회를 창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의 지자체간 협력사례

(1) 차세기 지역개발의 모델적 실천사업²⁾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시범적인 지역제휴 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의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차세대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모델적 실천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계획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실제 체험적 행정을 시도하는 것이다.

주요 사업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지역의 쾌적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것이며, 둘째는 교류촉진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복수의 시정촌이 제휴하여 행정기관과 민간참여 단체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999년도 7~8월 동안 건설성의 지방건설국을 창구로 공모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시지역을 결정하였다.

모델적 실천사업 실시지역의 규모는 31개 지역에서 575개 시정촌이 관계하고 있으며, 사업당 평균 19개의 시정촌, 최고는 77개 시정촌이 제휴하고 있다. 제휴의 형태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권역이 15개, 유역을 축으로 한 것이 12개, 도로를 축으로 한 것이 6개이다. 또 제휴활동의 주제는 자연, 관광, 정보가 많으며, 문화, 산업경제, 교육 등 다양하게 걸쳐 있다. 마지막으로 이 활동에

2) <http://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

관여하고 있는 주체는 행정 측에서는 시정촌, 도도부현, 중앙정부의 지방국 등이 있으며, 민간으로서는 시민단체, 관광협회, 상공회, 청년회의소,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고 있다.

(2) 환경관련 지자체 협력 사례: 폐기물 협동처리를 위한 (주)가즈사 그린 시스템 설립³⁾

치바현의 키사라즈시·홋초시·소데가우라에서는 다이옥신류의 배출농도를 억제하는 것을 큰 과제로 받아들이고, 적정 소각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이 광역적으로 제휴함으로써 적정 소각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 기업의 소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민간기업과 제휴하면서 1998년 12월에 제3섹터의 「주식회사 가즈사 그린 시스템」을 설립하였다. 이제3섹터의 핵심 주체는 동 사의 모체가 된 치바현 남부 광역 폐기물 처리사업 연구회에도 참여했던 민간기업이다. 이 기업이 개발한 시스템은 다이옥신류의 배출 농도를 억제하는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소각재·대형 폐기물 등을 동시에 용융하고 생성하는 용융 슬러그를 재활용함으로써 시정촌의 개별 소각시설을 필요 없게 하였다. 둘째, 용융물은 모두 재이용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대폭 줄었다.

이 결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출자금의 64%를 세 개의 민간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설비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로 하므로 네 개 시가 9억 엔(초기 사업비의 약 36%)을 출자하고 있다. 또 관민의 제휴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3섹터, 출자자(네 개 시, 민간기업), 치바현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이 제3섹터의 사업 계획, 수탁료에 대해 결정하는 기관이며, 출자 자체가 사업 운영을 체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공동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사례

① 兩毛 광역도시권종합정비추진 협의회⁴⁾

兩毛 광역도시권종합정비추진 협의회는 과거 군마현(上毛野)과 토치기현(下上野)이라고 하는 두 개 번에 걸쳐져 있던 兩毛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2년 20개 시정촌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 협의회에서는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템프 랠리의 실시, 공공시설의 상호 이용, 타운지의 발행 등과

3) <http://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jisedaijirei2.htm>

4) <http://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jisedaijirei2.htm>

03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兩毛 광역도시권종합정비추진협의회'는 1993년부터 지역 내의 명소, 고적을 방문하는 스템프 랠리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의 교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역사적인 일체감을 중시한 생활권의 형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동 협의회는 1995년도부터 공공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兩毛 광역 도시권내의 주민이 권역내 다른 시정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제한이나 할증요금 없이 현지의 주민과 같은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수도 당초의 199개소에서 222개소에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어, 1999년에는 공공시설의 상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안내서도 발행하였다.

② 노우미(能美)스포츠센터의 설치⁵⁾

이 센터는 히로시마현 노우미정(能美町) 등 4개 정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노우미정에 위치하고 있다. 조성비는 16억 엔이며, 이 중 90%는 노우미정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나머지 3개 정(町)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 이 사업은 히로시마현의 광역마치즈구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네 개 자치단체는 오래 전부터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장묘장, 폐기물 처리장 등을 각 정에 하나씩 나누어 설치하는 등 지역간 협력이 잘 되던 곳이어서 스포츠센터 설치를 위한 광역연합에도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스포츠센터의 입지는 사업실시에 대한 필요성 정도, 지리적 조건, 기존 체육시설과의 네트워킹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③ 유유(悠邑)후루사토회관⁶⁾

이 회관은 히로시마현과 시마네현과의 경계에 위치한 시마네현 7개 정촌(町村)이 공동으로 조성한 복합문화시설이다. 1,000석의 대규모 흘, 270석의 소규모 흘, 도서실, 사무실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邑智郡은 7개 정촌을 포함해서 인구가 31,000명 정도로 과소화가 진행된 지역이며,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7개 정촌 중 川本町은 84년부터 '음악의 마을'을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자치성에서 '청년정주촉진등 긴급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시마네 현에서는 광역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마네현광역적지역정비특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다. 7개 정촌은 연합하여 자치성과 시마네현의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중심적 위치인 川本町에 문화시설을 조성하는데 동의하였다.

5) 신창호, 2001.

6) www.web-sanin.co.jp/local/kawamoto/yuuuyuu

④ 오오노(大野)광역종합문화센터(에잇피아오오노)⁷⁾

이 센터는 1998년 9월 28일 개관하였으며 오오노군(大野郡) 8개 정촌으로 구성된 오오노광역연합이 설치한 문화시설로서 오이타현(大分縣) 三重町에 소재하고 있다. 에잇피아오오노의 명칭은 8개 정촌의 에잇(eight)과 유토피아(utopia)의 피아(pia)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센터 건설의 재원은 총액 50 억 엔으로서 광역연합의 자기자금이 29%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48%, 현으로부터의 지원이 23%를 차지한다. 이 흘의 운영은 광역연합이 직접 담당하며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민참가가 확대되고 있다.

(4)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협력

① 거리의 驛 홈페이지 사례⁸⁾

야마나시현小ぐ) 淋快시즈오카현 등의 18개 시정촌이 참가하고 있는 실증 실험 '거리의 驛'은 시정촌의 공공시설에 정보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역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제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부 서관동 시정촌 지역 제휴축협의회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간의 제휴 의식이나 지역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리의 驛' 홈페이지가 제안되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기존 시설에 정보 단말기를 설치하여 정보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보수집의 담당자인 지역 주민에 있어서도 주변의 정보거점이 생겨났다. 이 사업의 추진은 지역의 정보 수발신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거리의 驛'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은 3개월에 6.7만 건(1999년 3월 현재)에 달하였다.

또한 중부 서관동 시정촌 지역 제휴축협의회가 구축한 E-보트 교류회⁹⁾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富士川 유역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자원의 정보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지역자원을 취재하는 시스템을 겸해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神通川유역 제휴 연구회¹⁰⁾

이 연구회는 1995년에 기후현과 토야마현의 1시, 3정, 7촌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1995년에 기후현과 토야마현의 1시, 3정, 7촌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 연구회는 1995년에 기후현과 토야마현의 1시, 3정, 7촌의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7) 신창호, 2001.

8) <http://www.chiki-dukuri-hyakka.or.jp/book/machidukuri/24tyubu/2403.htm>

9) 이 사업은 강의 상류와 하류의 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10) http://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l/jisedai_jirei2.htm

03

구회는 지역 제휴에 대해 연구하고 협의하면서 실험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이 연구회는 자연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식을 계몽하는 것도 중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유역 단위로 활동하고 미지의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神通川유역에서는 종래부터 지역간에 다양한 교류나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 유역 지역이 일체가 되어 추진한 사업의 상당수는 단발성에 그치고 계속성이 부족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배경으로서 유역 주민의 神通川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었다. 神通川유역 제휴 연구회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의 하천에 대한 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어린이회 神通川상류와 하류 교류회'를 개설하였다. 이 사업은 상류부 미야무라의 어린이들과 하류부 토야마시 이와세 지구의 어린이들이 상류와 하류를 교대로 방문하여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강의 유역을 따라 이동함으로써 미지의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자연 환경에 대한 흥미를 더욱 북돋우게 되었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가족도 자연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으며, 최상류의 기후현 미야무라의 산촌 유역의 사람들이 참가해 나무를 심는 '원류의 숲 조성', 강 유역의 주민들이 원류를 견학하는 '神通川 원류 탐방회' 등과 같은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3) 지자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① 지방거점법

이 법은 지방거점 도시지역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고 거주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를 촉진하고자 1992년에 제정되었다. 지방거점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거점 도시지역의 정비 및 산업 업무시설의 재배치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도도부현 지사는 지방거점 도시지역을 지정하며, 지방거점 도시지역을 구성하는 시정촌은 자치단체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동의를 얻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본계획은 정비의 방침, 거점지구의 구역, 공공시설의 정비, 주택·주택지의 공급과 같은 거주환경의 정비, 인재육성·지역간교류·교양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재정·세제·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의 특례조치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 재무행정 상의 특례, 도시계획상의 특례, 공단·기구의 업무 특례, 세

제상의 특례,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나 주택·주택지의 공급 촉진, 지역의 전기통신 고도화에 대한 배려, 자금의 확보, 농지 전용에 대한 배려, 감시구역의 지정, 산업업무시설의 입지 적정화에 대한 배려 등이 협력사업에 대해 주어진다.

② 광역연합제도

광역연합제도는 다양화 되고 있는 광역행정 수요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을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95년 지방자치법상의 조합으로 도입되었다. 2001년 5월 1일 현재, 29개 道府縣에 74개의 광역연합이 발족되어 있다.

광역연합제도는 「지방공공단체의 조합」의 하나로서 만들어졌으나 탄력적이고 기동적인 광역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연합은 종전의 조합이 가지고 있던 사무의 공동처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해서, 광역계획을 작성하거나 연락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

제5차 전국총합개발계획은 광역적인 발상의 중요성과 국가가 다양한 지역 제휴를 지원하고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제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는 다양한 지역간 제휴를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제휴 축 구상, 다자연 거주지역의 창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도적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휴시책의 수법이나 사업내용 등을 체계화하고 보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기간인프라를 정비하거나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나 정보기반으로 연결된 도시권들이 산업, 문화, 도시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보완해 가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도화와 기반정비를 가능하게 하며, 또 지역이 속한 광역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3

4. 외국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추진 방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지역간 협력사업을 거시적인 지역정책의 틀 안에서 운용함으로써 전체 공간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이 단순한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개발 정책과 함께 추진됨으로써 전체 지역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지역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역간 협력사업의 기본정신은 유럽연합 차원의 결속과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지역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는데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역간 협력사업의 유형화를 통해 협력사업의 성격 및 주제에 따라 재정지원, 파트너십 구성, 목표설정 등 차별화된 운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공간적 대상에 따라 국경지역 협력, 국가간 협력, 지역간 협력으로 구분하며, 개별 협력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단위 협력, 개별협력사업, 네트워크 협력 등 유형화된 협력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사업이 지역이라는 공간적 틀과 사업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협력사업을 지역정책의 수단으로 도입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협력사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재정지원과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출연하고 참여지역이 속한 국가에서도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분담한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조직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는 지역간 협력사업의 구상에서 실천까지 모든 참여주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참여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사업추진을 선도하는 파트너의 재정부담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참여주체의 역할에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참여하는 개방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협력사업의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지자체간 협력은 환경·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공공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뤄지고 있고, 협력이 용이한 작은 사업부터 확대해 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역사·문화·자연적 요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협력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의 결정방법, 건설비 부담 비율, 관리 및 운영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간 이해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만 건설비나 관리 및 운영비의 부담비율은 상호 행정구역 인구비율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거리 비율로 배분하는 등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자체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입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일본의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사업주체간 직접적 연계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능적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지자체간 협력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992년에 지방거점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광역연합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 확정한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에서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추진체제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사례는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점증하고 있는 지자체간 협력에 입각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정책요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간 상생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제도 및 정책프로그램에 의한 체계적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 및 조정력 강화, 네트워크형 협력의 촉진, 합의형성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패러다임
① 자력갱생 패러다임
② 즉흥적, 신발적 협력 추진
③ 지자체 중심
④ 단선적 협력 - 인적교류, 단일사업 중심 - 관주도형
⑤ 갈등 및 분쟁조정기능 미약

새로운 패러다임
① 상생발전 패러다임
② 제도 및 정책프로그램에 의한 추진
③ 중앙정부의 지원, 조정 역할 강화
④ 네트워크형 협력 - 복합적인 협력사업 - 민관협력 파트너십
⑤ 체계화된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
한국형 지역협력모델 정립

그림4. 지역간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03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프로그램의 도입과 제도적 기반 구축,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도입은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지자체간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지역간 협력사업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등이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쳐 협력사업의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높다.

지자체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는 지역간(inter-local) 또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협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 관련 지역간 협력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간, 지자체-지자체간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먼저 중앙정부는 지자체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 제도 정비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간 갈등조정 및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 협력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내, 지역간 파트너십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내 주체들이 공동 학습을 통하여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웅, 2001,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방향, 이정식·김용웅(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서울·한울.
 박양호 외, 2003,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연구(I), 안양·국토연구원.
 박양호 외, 2004,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연구(II), 안양·국토연구원.
 신창호, 2001,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대한 제도와 사례」 「도시문제」, 2001년 8월호.
 이종화, 2003,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간 협력·제휴,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서울: 나남.
 정우주, 2004,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교구)간 협력 「국토계획」 제39권 제6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방안.
 한표환 외, 2002,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김선기, 2003,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별 성공·실패요인 분석과 추진방안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Cappellin R 1993,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ope : An Introduction," R. Cappellin and P.W.J. Batey (eds.), Regional Networks, Border Reg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Pion Ltd
 Cappellin R 1993,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ope : An Introduction," R. Cappellin and P.W.J. Batey (eds.), Regional Networks, Border Regions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Pion Ltd
 ERDF, 2003, EU Community Initiative INTERREG IIC Program Manual.
 International Working Party-West Zone, 2001, ERDF 2000-2006 Community Initiative Programme INTERREG II C West Zone.
 Interreg IIC North JTS, 2003, Statistics of 1st Application Round.
 INTERREG IIC North Joint Technical Secretariat, 2004, INTERREG IIC.
 Wobben T, 2002, INTERREG II C: Past experiences and future expectations on Interregional Cooperation INTERREG II update seminar, Brussels, 2002. 12. 12.

〈인터넷〉

- www.chiiki-dukuri-hyakka.or.jp/book/machidukuri/26seto/2601.htm.
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
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hyou.htm.
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jesedaijirei1.htm.
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jesedaijirei2.htm.
www.chiiki-dukuri-hyakka.or.jp/book/machidukuri/24yuubu/2401.htm.
www.mlit.go.jp/sogoseisaku/region/model/houkoku.htm.
www.web-sarin.co.jp/local/kawamoto/yuu.yuu.
www22.freeweb.net/parl/wajou/sakuhinnshoukai.htm.